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당 초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거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3.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입에 따른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거창군 귀속분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입
5. 국·도비 보조금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2.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3. 토지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
4.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5. 공유재산의 관리

제4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등)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 일반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고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고부가가치로 수익증대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 및 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산화
4.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제3조(세입) 거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3.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입에 따른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속분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에 수입
5. 국·도비 보조금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활용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의 취득
2.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3. 토지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합병 및 집산화
4.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5. 공유재산의 관리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징

수관 및 경리관으로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제7조(금고의 지정)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입에 예상 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등)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예산의 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사전 군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